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84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에 따라 설치한 시설임.
- 나.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형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통해 노동 약자 등에게 다양한 복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 소재지 : 마포구 아현동 711-2(환일길13)
- 시설규모 : 연면적 2,773.33㎡(지하1층~지상5층)
- 개관일 : 2002. 3. 28.
- 수탁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 위탁기간 : '20. 9. 25. ~ '23. 9. 24.(8차)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노동자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 위탁업무
 - 복지관 건물(시설물) 유지·관리
 -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 직업안정, 교양·교육, 체육·문화 등 노동복지 프로그램
 - 기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 : 240백만원('23년 예산편성액)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라.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경과

- '02.03.21.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계획 수립(고용68100-413)
- '02.03.28. 노동자복지관 개관(중구 장충동 132 483.6㎡)

○ '02.08.07. 노동자복지관 관리위탁 수의계약(전국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위탁계약(재계약)체결 현황

- 민간위탁 재계약 : 제8차 위수탁계약('20.09.25.~'23.09.24)

○ '22.06.28. 노동자복지관(4차) 이전(미포구 이현동 711-2, 2,773.33㎡)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동 상담·교육·복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기능 제공 및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약자 등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과 민간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이 필요함

바. '23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 제출

※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마형민 (☎ 2133-5427)